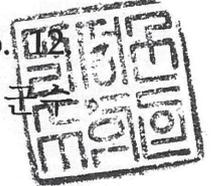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1)
----------	-------

제출일자 : 2016. 08. 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다사읍 인구 7만명 이상으로 다사읍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방안(행자부)에 의거 감염병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인력을 보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

- 총 정원 : 817명 → 818명 (증1)

- 집행기관 정원 : 804명 → 805명 (증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

나. 예산조치 : 2017년 본예산 편성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규제심사 : 원안 동의
- (4) 입법예고 : 생략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17”를 “818”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804”를 “805”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17818	515	13	9091	96	10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1792	511	13	6869	96	103
3급	1	1				
4급	56	4		1	01	
5급	4039	25	3	3	32	6
6급이하 계	745746	481	10	6465	93	97
연구직 계	2	2				
연구 관						
연구 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0			20		
별정직 계	1	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817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04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_____</p> <p>_____</p> <p>_____ <u>818명</u>_____</p> <p>_____.</p> <p>1. _____ : <u>805명</u></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17	515	13	90	96	10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1	511	13	68	96	103
3급	1	1				
4급	5	4		1		
5급	40	25	3	3	3	6
6급이하계	745	481	10	64	93	97
연구직 계	2	2				
연구 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도관	2			2		
지도사	20			20		
별정직 계	1	1				
5급상당						
6급상당 이하계	1	1				

개 정 안

【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818	515	13	91	96	10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92	511	13	69	96	103
3급	1	1				
4급	6	4		1	1	
5급	39	25	3	3	2	6
6급이하계	746	481	10	65	93	97
연구직 계	2	2				
연구 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22			22		
지도관	2			2		
지도사	20			20		
별정직 계	1	1				
5급상당						
6급상당 이하계	1	1				

소요비용 추계서

1. 사업개요

다사읍장 직급 5급에서 4급 조정 및 감염병 전담인력 보강에 따른 일반직 정원 증원

2. 비용 발생 요인

가. 증원 : 보건8급 1명

나. 직급조정 : 다사읍장 5급 → 4급 1명

3. 관련 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 4급(연봉), 5급(30호봉), 8급(10호봉)기준으로 작성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율은 3.8%로 산정

나. 추계 결과 : 413,997천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413,997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재원조달방안 : 군비 413,997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	2차년도 (2017)	3차년도 (2018)	4차년도 (2019)	5차년도 (2020)	계
세 입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지 방 세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의존재원						
세 출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인 건 비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재원 조달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균 비	76,741	79,657	82,684	85,826	89,087	413,997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비 고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 따라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읍장·부면장은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총무 업무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겸한다.
5. 제6조제7항에 따라 위 표의 보조·보좌기관의 명칭(읍·면·동에 과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과장은 제외한다)을 달리 정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한 직급기준의 직근 하위직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